

정정과 사과
- 신문평의회사례 -

1. 정정보도를 해야 할 경우

1. 주택건축비의 오보

어떤 독자가 선데이 · 익스프레스 지의 주간인 른 · 고든씨에게 경찰관용으로 20 채의 주택을 평균 5 천 7 백 9 파운드를 들여 건축한다는 보도는 정확치 않으며 한 채당 비용은 2 천 7 백 10 파운드이므로 정정을 내야 한다는 편지를 냈다. 고든씨는 이 숫자가 데일리 · 메일 지에 실린 것으로 데일리 · 메일 지에 말해서 정정되게끔 하면 우리도 같은 정정을 하겠다고 답변하고 주참사회도 이 숫자를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독자는 재차 고든씨에게 정정을 요구하면서 이를 평의회에 제소하겠다고 통고했다. 이에 대해 고든씨는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신문평의회에 제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나 닷소부인의 인형관이든지, 스포트니크보호협회든지, 북대서양조약기구든지, 유네스코든지, 회교수도증협회든지 좋으신대로 제소하십시오. 기분이 내키시는 대로……」 평의회는 고든씨가 자신의 신문에 오보를 하고 있으면서 4 회에 걸친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58 년)

2. 생계비 상승률의 오보

데일리 · 익스프레스 지는 『물가 안정되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영국의 전년도 생계비상승이 다른 많은 나라들에 비해 낮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바른 나라들의 식료비지수를 내고 있을 뿐, 증가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정정요구가 나왔다. 더우기 데일리 · 익스프레스 지의 표에는 지수가 영국보다 낮은 5 개국이 빠져있으므로 이를 정정하라는 내용이다. 편집장 디렉 · 마크스씨는, 기사의 내용은 노동성 홍보지를 정확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정요구가운데에는 다만 한가지 내용에서만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경제부의 담당기자는 영국의 물가전체의 지수를 다른 나라의 식료비지수와 비교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신문이 대중에게 엄청난 오해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며, 또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대만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중대한 사실의 보도에 잘못이 있었으므로 즉각 정정해야만 한다고 결정했다(1966 년)

3. 날조된 담화내용에 대해 무조건 사죄요구

데일리 · 메일 지는 가나주재 런던사무소 고등변무관의 말을 인용, 앙쿠르마 대통령의 정적이 체포된 것은 가까운 시일내에 예정되고 있는 여왕의 동국 방문 중에 데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뉴스란에 실고 사설에서는 이들에 대한 체포는

여장의 경호를 위해 취해진 것이라는 고등변무관의 담화를 실었다. 고등변무관은 전적으로 날조된 것이며 말하지도 않은 것을 썼다고 무조건사죄를 요구했다. 데일리 · 메일 지의 편집장 윌러엄 · 하드카슬씨는 잘못 인용된 데 대해 정정하겠으나 말을 한 것은 신문담당자였다는 설명을 붙이겠다고 했다. 고등변무관은 신문담당자는 하급직원이며 담화 발표의 자격도 없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했다. 기자는 정정문에 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쌍방의 증언이 서로 다르므로 평의회는 신문과 가나직원의 대표자를 불러 직접 증언토록 했다. 신문측 대표는 출석했으나 가나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평의회는 가나측의 불참석으로 회견의 진상을 판정하지는 못했으나 기자가 회견내용의 인용을 잘못하여 고등변무관의 담화로 한 것도 착오였다는 철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으므로 문장에 관해 합의하느냐 못하느냐에 관계없이 데일리 · 메일 지는 즉각 정정했어야 했다고 판정했다. (1962년)

4. 「지면에는 지나치게 긴」 정정문

국회의원 F.J. 베렌자씨는 「선데이 · 익스프레스」 지가 1957년 12월 『노동당의 전장관이 6인에게 퇴거를 통고』 하는 제목으로 쓸 기사에 정정을 요구했다. 기사의 일부에는 오보가 있었으나 신문과의 사이에 정정형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의회는 기사의 일부가 부정확하다고 인정, 정정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평의회는 베렌자씨가 신문사에 요구하여 투서를 게재시켜 관리인이 6인 중 3인에게 퇴거를 통고했으나 임대요건을 갱신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이 기사가 나간 뒤 마음이 변해 부동산을 그대로 매각하게끔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베렌자씨는 투서했으나 선데이 · 익스프레스 지는 지나치게 길다는 이유로 게재를 거부, 결국 이 투서는 바셋드로지구의 선거민에게 읽히기 위해 워크숍 · 가디언 지에 게재되었다. (1958년)

5. 큰 오보와 작은 오보

어떤 아버지가 데일리 · 메일 지에 게재된 자식의 교통사고사에 관한 검시기사에 대해 두 가지 큰 오보가 있어 자식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인상을 주고 있다고 제소했다. 편집장은 정정이나 사과를 내거나 제소자인 아버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의 편지를 내는 것도 거부하고 평의회에 대해 「작은 부정확이 사실상 있었다」 고 하더라도 이것이 「큰」 오보라고 하든가 부친이나 가족에게 슬픈 고통을 주었다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고했다. 통고에는 『기사에 중대한 오보가 있으면 이를 정정하고 더욱이 손해를 입혔거나 사람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들의 견해에 의하면 근거가 박약한 경우 억지로 정정이나 사과를 내도록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들 자신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며 또 신문계 전체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단호히 표명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평의회는 이 아버지와 그의 가족이 정정과 사과를 내게 할 권리가 있으며 편집자가 간단한 정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재하지 않은데 대해 비난했다. (1960년)

II. 정정에 사과를 곁들여야 할 경우

1. 키프로스의 부활제

데일리 · 메일 지는 3인의 그리스 정교의 목사가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는데 단상에는 칼이 꽃힌 총 세 자루가 세워져 있었다. 실명에는, 키프로스의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부활제를 경축하여 꽃을 뿌리는데 어른들은 「총을 어깨에 메고」 교회에 모여 기도를 한다고 되어 있었으며 제목은 『십자가가 아닌 총……부활제에서 신에게 독립을 감사』라고 되어 있었고 세워져 있는 총은 그리스 정교의 상징이라 적혀 있었다. 어떤 독자가 이는 그리스 정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제소했다. 편집국장 E. V. 마슈만씨는 사실확인용 용납하기 어려운 빠뜨림과 실수가 있었으며 사진에서부터 잘못된 결론을 내고 말았다고 말하고 그리스 정교의 부활제까지는 아직 한 달이나 남아있으므로 이사진이 부활제식전의 것일 수는 없다는 투서를 게재했다. 이 사진은 그리스 독립기념일의 식전을 촬영한 것이었다. 평의회는 신문이 잘못을 인정했으므로 정정의 투서에는 편집자가 사과의 주를 달았어야 했다고 판정했다.(1965년)

2. 음료수에 불화물 첨가

나츠포드 · 가디언 지는 음료수에 불화물을 넣는 것에 반대하여 왔었는데 고 케네디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불화물이 든 물을 먹이지 않았다는 기사를 냈다. 8개월 후 동지는 케네디대통령의 태도에 관한 기사가 전혀 거짓이었다는 투서를 게재했다. 기사에 의하면 미대사관 및 미치과의협회로부터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대통령관저에 공급되고 있는 불화물이 든 물을 마시고 있었다는 증거문서를 입수했다는 것이었다. 이에는 편집부의 주가 붙어 있었으며 신문기사의 출처는 「유력한 워싱턴의 소식통」으로 되어 있을 뿐 정정이나 사과가 없었다. 편집주간 M. J. 트렌치씨는 정정요구에 답변, 사실확인을 취해 상당한 노력을 했으나 기사의 출처를 밝힐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반론의 투서가 게재되었던 편집부의 주에는 이를 받아드린다는 취지가 있었다. 누구든지 손상된 사람이 없는 경우 신문의 정정에 사과를 넣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평의회는 이 편집부의 주가 정정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지적, 명확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독자에게 오해를 준데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을 훈계했다. (1964년)

3. 의약품과 화장품

데일리 · 메일 지는 『영업번창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약제사협회는 의약품 판매를 약국에만 한정,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는 판매를 금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수일 후 데일리 · 메일은 동협회원으로부터 보내온 투서를 실었는데 그 투서는 기사에 의하면 약제사협회가 백화점에서의 화장품판매를 금지시킬 생각이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을런지 모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의도는 슈퍼마켓 안에 약국이 생겨 여기에서 의약품 외에 화장품이나 사진재료 같은 것을 팔게 되어 기존의 약국이 의약품 이외의 매상을 올릴 수 없게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었다. 기사는 정확치 않으므로 신문은 정정과 사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편집국장 E. V. 마슈만씨는 오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투서를 게재하지 않았느냐고 답변했다. 평의회는

데일리 · 메일 지가 정정요구의 투서를 실은 것으로 오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편집장의 사과를 붙여야만 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1966 년)

III. 평의회가 조사한 후에 정정

1.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오해하여 오보

국회의원 조지 · 제저씨는 데일리 · 익스프레스와 이브닝 · 스탠다드지가 의원세비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를 오해하여 의원부인에게도 철도 승차증을 발행하는데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제소했다. 신문측은 보고서의 표현이 애매했다고 지적, 권위 있는 해석이
게시되면 이를 기사로 하겠다고 평의회에 회답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크레멘트 · 데이비스
의원이 성명을 내고 양 지는 이를 정정하여 게재했다. (1954 년)

2. 「약국」이라는 표현은 잘못

약제사협회는 이브닝 · 애드버타이저가 어떤 법정기사를 쓰면서 「약국」이라는 명칭을 잘못
쓰는데다가 협회의 정정요구투서까지도 게재하지 않았다고 제소했다. 「약국」이라는 명칭은
법률에 의해 협회에 등록된 사람, 약제사를 관리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법인이 물품을
소매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평의회는 약국법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정정을 내야만 하며 덧붙여 「문제의 회사는 약국을 하고 있었던 것이며 약국은
아니라고 신문평의회에 보고했다」고 첨가하도록 쌍방에 통고, 신문사는 전문을 게재했다.
(1957 년)

IV. 정정의 크기와 위치

1. 눈에 띄지 않는 정정

스코트랜드 교육협회는 그라스고 · 선데이포스트 가 렌푸루샤의 아이들에게 유럽여행을
시키기 위해 공금이 사용되었다는 부정확한 기사를 크게 보도했다고 해서 제소했다. 정정을
요구했으나 신문은 「베이즈리의 교사」라는 필명으로 이 문제에 관한 투서를 눈에 잘 의지
않는 곳에 게재했을 뿐이었다. 협회는 학생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급여도 받지 않고 여행에
참가한 일부의 교사에 대해 신문은 편견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평의회는 신문이
공중에게 편견을 갖게끔 하는 기사를 크게 취급하고 있으면서 그에 알맞은 크기의 정정을
내지 않았고 투서로서 약간의 정정을 하긴 했지만 편집부로서의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결정했다. 『사실이 오보되어 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편집자의 주의를 환기한 경우에는 본래의 오보를 읽은 사람의 눈에 잘 띄일만한 페이지에
솔직한 정정과 사과를 내는 것이 신문계의 원칙이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1955 년)

2. 속보 말미에 정정

스코티쉬 · 데일리 · 익스프레스는 『5 시간의 토론, 18 분의 침묵-열광적인 박수로 학교장
패퇴, 표수는 34 대 1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는 주교육위원회의 회합에서 어떤

학교장이 정직처분 된 것을 보도한 것인데 열광적인 박수가 일어난 것은 패표한 때가 아니고 한참 뒤에 저장의 사회가 훌륭했다는 발언이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기사제목이 오보가 되고 말았다. 또 1면에 의장의 사진은 학교장에게 결정을 통고할 때의 장면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점심식사를 위해 휴식에 들어갔을 때에 촬영한 것(이 점은 다음날에 정정되었다)이었다는 항의도 있었다. 평의회는 신문이 근거없는 확정을 하지 말고 박수의 이유를 조사했어야만 했으며 투표 시 신문기자가 현장에 있었다라면 착오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사진설명도 편집자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악의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게재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의회는 정정이 다음날 같은 문제를 다른 속보의 말미에 취급된 것에 주목하여 이러한 종류의 정정으로서 이 이상 좋은 장소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1960년)

3. 검시결과 기사 - 정정이 불충분

자전거를 탄 73세의 노인이 스포츠카와 충돌하여 사망했는데 검시를 한 결과를 다룬 기사에서 스타퍼드·뉴스레터 지는 『노인을 70피트나 끌고 간다』는 제목으로 자동차가 서기까지 70피트나 노인을 차에 걸고 주행했다고 보도했다. 다음주 동지는 검시재개의 결과 사고사로 결말이 났음을 보도하면서 다른 페이지에 『검시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했다.

「지난주 검시신문개시의 기사에서 자전거가 충돌 후 70피트나 끌려갔다고 쓴 것은 27피트의 잘못이었습니다. 오보와 관계자에게 괴로움을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합니다.」 스포츠카 운전수의 변호사가 당초의 기사제목에 대해 항의를 제기한 것이다. 운전수에게는 아무런 실수도 없었는데 신문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제목을 조작했다. 정정의 방법에 대해서도 불만이었으며 지면의 위치가 속보장소와 바른 것에도 불복이었다고 한다. 편집장 표지·그라임즈씨는 최초의 기사에서 운전수의 이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정기사에서 이름을 밝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정을 바른 페이지에 실었다는 것이다. 정정이나 사과를 눈에 띄이지 않게 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는 것이다. 평의회는 정정이 불충분하다고 단정, 피해자 측의 항의를 지지했다. (1966년)

V. 정정을 내야 할 판

1. 빠른 판에만 게재한 후 바꿔치기

금연협회 사무국장은 더·타임즈가 버스 안에서의 깃연에 관한 교통부령을 부정확하게 기사화했으면서 이를 정정하지 않는다고 제소했다. 편집장 서·윌리엄·헤일리씨는 당초의 기사에 잘못이 있음을 시인, 후에 정정을 빠른 판에 내긴 했으나 밤중에 바른 뉴스가 있어 바꿔치기 했다고 밝혔다. 평의회는 당초의 기사가 눈에 잘 띄이는 장소에 실리고 그 내용도 잘못이 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반해 정정은 빠른 판에 내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전부의 판에 석명기사가 나가도록 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1960년)

2. 일요 판에만 게재

스코티쉬 · 데 일 리 · 익스프레스 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인바네스 지부가 전국 1 일 스트라이크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화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낸 것으로, 후에 가짜 정보임이 밝혀졌다. 실제에 있어서 이 지부는 압도적 다수로 찬성이었다. 조합의 지구평의회가 신문에 오보를 알렸더니 편집장은 신문의 오보를 인정하면서도 정정은 하지 않았다. 편집장은 조항에 대해 가짜정보를 흘린 사람의 정체를 조사중이라고 말했으나 5 개월이 지나도록 정체를 잡지 못했다는 것뿐이었다. 편집장 영 · 매콜씨는 평의회에 대해 기사는 악의가 있어 핀 것이 아니며 가짜 정보를 흘린자의 정체가 밝혀지기까지는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조합측도 양해하고 있었고 스코리쉬 · 데일리 · 익스프레스에 기사가 난 다음날 스코티쉬 · 선데이 · 익스프레스 지에는 정정을 냈다고 설명했다. 평의회는 문제의 성질상 스코티쉬 · 선데이 · 익스프레스 지에 낸 것만으로는 정정으로서 불충분하다고 판정했다. (1963 년)

VI. 사과가 없어도 무관한 정정

1. 착각하여 「죽었다」 고 보도

데일리 · 테레그라프의 가십란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오보가 났다. 다음날 정정이 나왔는데 「실은 건전하게 살아 있다니 축하할 일이다」 라고 되어 있어 당사자는 정정기사에 아무런 사과도 없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편집장 모릴스 · 그린씨는 기사에는 전혀 악의가 없으며 정확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즉각 정정을 했다고 밝히면서 사과를 첨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용서를 빌었다. 평의회는 신문사는 독자에게 오보를 알리기 위해 즉각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고 정정에는 한마디 사과의 말이 있었던 편이 나왔겠으나 오보정정의 중대한 요소가 지체없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의 정정항의를 각하했다. (1965 년)

2. 선거결과의 오보

에섹스주 참사회의 선거결과를 보도한 빌리케 · 타임즈 는 어떤 후보자가 2 천 표로 당선되었다고 썼으나 실은 2 백 표를 잘못 쓴 것이었다. 같은 판의 다른 페이지에도 이러한 착오가 되풀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이는 고의적인 오보로 정정도 내지 않고 있는 정치적 편견에 의한 것이라고 제소했다. 편집국장은 이것이 전화송고에 의한 착오로 오보였음을 시인했다. 다음주 지면에는 오보와 관련된 낙선후보의 투서가 게재되고 선거가 있는 지구의 지방판에도 특별히 정정을 냈다. 평의회는 고의로 오보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의 판에는 투서, 또 다른 판에는 사과가 나왔으므로 정정은 적절했다고 판정했다. (1962 년)

VII. 정정권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1. 반유타주의는 아니다.

영국의 유태인대표자회는 뉴스·크로니클 지가 런던의 경찰관살해사건으로 뒤에 교수형에 처해진 「보드라」라는 남자를 「폴란드계 유태인」이라고 오보한 데 대해 제소했다. 정정은 나가지 않고 「영국에 거주하는 유태인이면 당연히 느끼는 반감」이라 쓰는데 대해서도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 크로니클 지의 편집장 N·S·카스리씨는 오보를 시인했으나 진상을 알고는 다음날부터 기사내용을 바꿨다고 해명하고 반유태주의라는 의견에 반대했다. 평의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대표자회가 오보정정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반유태주의 의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단정했다. (1960년)

2. 한눈에 알 수 있는 착오

요크셔·이브닝·포스트 지는 『노역수지차 1억 3백만 파운드나 늘어』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다. 본문에는 「수출입총액의 단순집계차액은 10월 중 9천 2백만 파운드에서 1억 3백만 파운드로 늘었다」는 내용이었다. 잘못된 제목을 붙여놓고도 정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제소했다. 독자는 제목을 믿고 그 이상 기사를 읽거나 실제의 증가액을 계산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정정요구의 이유이다. 편집주간 G·R·하디카씨는 정확하고 올바른 숫자가 본문기사에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의회는 제목의 잘못은 명백하며 본문기사내용과도 바르니 정정을 낼 것인지 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편집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정했다. (1965년)